

해 외 고 급 과 학 자 초 빙 (Brain Pool)사업 안내집



2012. 1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I . 사업개요	1
1. 목적	1
2. 근거법령	1
3. 주요연혁	2
4. 신청과제 및 분야	2
5. 초빙대상국가	3
6. 초빙대상 및 자격	3
7. 신청 대상기관 및 방법	4
8. 초빙기간	4
9. 지원내용	4
10. 지원방식	5
11. 평가	6
12. 추진체계(관리기관)	6
II . 사업안내	7
1. 신청방법	7
2. 제출서류	7
3. 심사 및 선정	8

4. 선정결과 통보	9
5. 초빙계약 체결	9
6. 입국보고 및 활용계약 체결	9
7. 결과보고서 제출	9
8. 활용성과 평가 및 통보	9
9. 활용계획 변경	10
10. 활용경비 지급	10
11. 활용기간중 해외출장	13
12. 연구지원비 및 유치경비 정산	14
13. 문의처	14
14. 활용지원 중단 및 자금회수	15
15. 활용기관의 준수사항	15
16. 연구결과 사후관리	16

III. 사업추진절차

17

I 사업 개요

1 목 적

-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인 과학자 및 해외교포 과학자를 초청·활용
 - 연구개발단계에서 최신 과학기술 조기 습득을 통한 선진기술 개발
- 세계적 수준의 해외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공동 참여토록 하여 연구개발 수준을 높임
 - 선진국들의 핵심기술 이전 기피 등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타파하고 적극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
-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의 부족한 우수 연구인력을 중점 보완함으로써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2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추진]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5조 [재외과학기술자 국내 유치 및 활용]

3 | 주요연혁

1993년 7월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 전략부문으로 해외 고급과학두뇌유치·활용(Brain Pool)제도 계획 수립
1994년 1월	Brain Pool제도 설치, 운영방안 확정
1994년 2월	Brain Pool제도 시행
2002년 10월	Brain Pool사업 통합운영 기본방안 수립
2003년	해외고급과학두뇌유치·활용(Brain Pool)사업 통합운영 기본방안 - Brain Pool사업과 과학기술인력교류사업 통합
2003년 2월	Brain Pool사업 통합에 따른 운영약관 개정
2004년 10월	Brain Pool사업 주관 부처 변경 -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에서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
2009년 7월	한국연구재단 출범으로 업무이관
2010년 11월	Brain Pool 사업관리 전담기관을 과총으로 지정, 시행 [연구기관지원과-2910(2010.11.04.)]
2011년 4월	Brain Pool 사업 운영지침 개정

4 | 신청과제 및 분야

- 신청과제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국가전략적 추진과제로써, 해외고급과학두뇌 활용이 필요한 과제

□ 신청분야 : 과학기술 모든 분야

○ 기초분야

- 수학 · 물리학 · 화학 · 생물 · 지구과학 · 측정 · 표준 · 천문 등

○ 기계 · 소재 · 항공우주분야

- 기계 · 선박 · 항공 · 우주 · 소재 등

○ 전기 · 전자 · 정보통신분야

- 전기 · 동력 · 전자 · 컴퓨터 · 통신 · 광기술 · 응용물리 등

○ 화공 · 생명과학분야

- 응용화학 · 화공 · 생명공학 · 농수산 · 보건 등

○ 자원 · 해양 · 환경 · 건설분야

- 자원 · 해양 · 환경 · 건설 등

○ 에너지분야

- 원자력 등

5 | 초빙대상국가

□ 전세계 국가

6 | 초빙대상 및 자격

□ 해외거주자로서 박사학위 취득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 과학기술자 ※신청시점 해외현지에서 6개월이상 체류중인자

○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 또는 Know-how를 보유한 자의 경우 학력 및 경력 예외 인정

○ 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자도 가능

7 신청 대상기관 및 방법

- 신청대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중 특정 산업체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설립되고, 그 특정 산업체를 위하여 운영되는 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기관 지원 기준에 따름

- 활용방법 : 기존 또는 신규 연구개발팀에 합류시켜 공동연구 수행
 - 활용기간 동안 활용기관에서 Full-time 근무
 - 대학에서 초빙할 경우 필요에 따라 사업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1과목 이내 강의 허용, 각종 학술회의·세미나 참석 및 발표, 타 기관에 대한 일시적 기술자문, 교육기부 등은 가능

8 초빙 기간

- 3개월 이상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기간 내 활용기관에서 Full-Time)
 - 기한 만료 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
 - 초빙기간은 12개월 기준으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

9 지원 내용

- 연구지원비 :
 - 초빙대상자의 연구경력 및 해당국가에서의 현지보수, 과학논문 인용색인지수(SCI) 저널논문 게재 실적, 특허 건수, 활용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 기업부설연구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은 연구지원비의 90%를 지원함 (중소기업 부담 10%)

□ 유치경비 [항공료, 이사비, 상해·질병보험 가입료 등] :

- 항공료 : Economy Class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며, 초빙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배우자의 왕복 항공권 지원
(활용개시 1개월이전 입국시 입국항공료 지원불가, 활용종료 1개월이후 출국시 출국항공료 지원불가)
- 이사비 : 초빙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 초빙대상자의 지역을 고려하여 출국시에만 차등 지급 (활용 개시 1개월 이전에 입국한 기입국자는 지원하지 않음)
- 상해·질병보험료 : 초빙과학기술자 본인에 한하여 지원
 - 주관연구기관이 보험회사 상품 활용
 - 주관연구기관이 활용과학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10 | 지원방식

- 연구지원비 : 초빙과학자가 입국후 활용기관이 과총에 입국보고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지원비 지급
 - 주관연구기관은 초빙과학자에게 매월 월정액 지급
- 유치경비 : 초빙과학자가 입국후 1주일 이내에 입국보고서를 과총에 제출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지급
 - 주관연구기관은 지급받은 경비를 초빙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고 발생잔액을 과총에 반납

11 | 평 가

- 운영위원회에서 초빙과학자의 활동실적에 대해 활용종료 시점에 결과를 평가하여 '적정', '부적정' 여부를 결정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자료 보완,

12 | 추진체계(관리기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이라 칭함)
: 초빙과학자 선정, 평가 등 사업운영 및 관리와 초빙과학자 경비지원, 협약체결 및 자금관리, 사업실적 및 성과관리 등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와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촉진하고 각종 과학기술정책연구·기획·조사·자문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6년 12월 26일 설립허가된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사단법인입니다.

II

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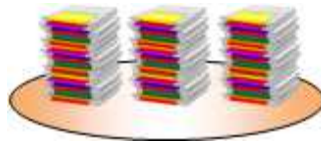
1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해외고급과학자 초빙 희망기관(과제책임자)이 홈페이지 (www.brainpool.or.kr)에 온라인 신청
 - 주관연구기관에서 신청과제에 부합하는 초빙과학자를 직접 추천, 신청



초빙코자 하는 초빙과학자를 신청기관(과제책임자)이 직접 추천



과제, 초빙과학자 관련자료 준비



과제책임자가 직접 온라인 지원신청

2

제출서류

- 과제 및 초빙대상자 동시 신청서
 - 지원과제 신청서
 - 초빙과학자 신청서
 - 인적사항, 이력서(연구경력 및 실적 포함)
 - 과학논문인용색인 (SCI) 지수저널 수록논문 게재편수 및 논문목록
 - 특허권 [특허 건수 및 특허 취득번호 명기]
 - 최종학위증명서, 최종경력 및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 초빙과학자의 초빙 수락서
- 산기협 발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소개책자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3

심사 및 선정

- 분야별 선정위원회에서 신청과제의 타당성 및 유치활용 대상자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선정
- 운영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지원비, 초빙기간 등을 포함하여 초빙 과학자 최종 확정
- 과제와 초빙과학자는 분류하여 심사하며, 각각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최종 선정됨
- 과제와 초빙과학자중 점수 미달이 생길경우, 다른 과제 또는 다른 초빙과학자로 대체하여 향후 재신청 가능함
- 활용기간 연장시에도 신규신청과 같은 절차로 심사

초빙과학자 선정절차

구 분	추진절차	주요내용
과제공모	사업공고	- 사업안내 확정 및 공고
	신청서접수	- 과제 및 초빙과학자 동시 신청서 접수
↓	요건심사	- 활용대상기관, 활용예정기간, 초빙대상 및 자격 구비서류 심사
	전문가 평가	- 6개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 - 국가전략적 추진과제, 활용기대효과 등 평가
	종합평가	- 총괄선정평가 위원회 - 활용과제 확정

4 선정결과 통보

- 선정 결과를 주관연구기관, 초빙과학자에 통보

5 초빙계약 체결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후 초빙과학자와 선정내용(연구지원비, 초빙기간 등)을 협의하여 초빙계약 체결

6 입국보고 및 초빙협약 체결

- 제출시기 : 초빙과학자가 입국 즉시 주관연구기관에서 작성
- 제출방법 : 홈페이지(www.brainpool.or.kr) → 보고서제출 → 입국보고서 작성
- 제출자료
 - 여권사본(인적사항면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확인 도장면 포함)
 - 서약서
 - 초빙계약서(초빙과학자와 주관연구기관이 체결)
 - 초빙협약서(과총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

7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초빙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에서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 홈페이지(www.brainpool.or.kr) → 보고서제출 →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자료
 - 연구지원비, 유치경비 등 사업비 정산내역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초빙과학자 관리카드 및 활동보고서

8 | 활용성과 평가 및 통보

- 과총은 결과보고서 접수 후 활용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 후 '부적정' 일 경우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9 | 협약의 변경

- 과제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과총에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과총회장은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활용연장신청시 기존의 성과자료(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10 | 활용경비 지급

□ 연구지원비

- 1년 단위로 지급 (초빙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 그에 맞게 지급)
- 초빙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나 심사에 의해 결정.
단, 선정기간 만료후에는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중 마지막 1년(3년차)의 연구지원비 50%는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사업비(연구지원비, 유치경비)는 초빙과학자의 입국보고서(협약체결)를 과총에 제출하면 주관연구기관으로 일괄 지급함.
- 중소기업은 연구지원비의 90%를 지원하며, 기업에서 10% 부담 지원
(예 : 3등급일 경우 450만원 중 415만원 BP 지원, 45만원 기관 지원)
- 연구지원비는 《연구지원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책정되나 선정인원, 초빙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등급별 연구지원비 책정기준 》

(단위: 천원)

등 급	지원액(월)	비 고
(가)군 (90점 이상)	6,000~10,000	※ (가)군은 기관이 신청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
(나)군 (90점 이상)	5,500	
(다)군 (80~89점)	5,000	
(라)군 (70~79점)	4,500	※ (가)군 운영을 유연하게 진행하여 필요한 경우 BP사업을 통해 최고수준의 과학자를 초빙할 수 있도록 유도
(마)군 (60~69점)	4,000	
(바)군 (50~59점)	3,500	
(사)군 (40~49점)	3,000	

□ 유치경비(항공료, 이사비, 상해·질병보험료)

- 유치경비는 지역별·초빙기간별 책정기준에 의거 지급함
- 지급받은 유치경비는 활용종료후 정산하고 잔액은 과충에 반납하여야 함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증빙서류포함)를 홈페이지(www.brainpool.or.kr) → 보고서제출 → 결과보고서에 온라인 등록)

《 유치경비의 지역별·초빙기간별 책정기준 》

(단위 : 천원)

지 역	6개월이상 활용자	6개월미만 활용자	3개월 활용자
일본, 중국, 대만	2,700	1,900	1,350
기타 아시아지역	4,000	2,800	2,000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동, 미국(서부), 호주	4,500	3,150	2,250
미국(중·동부), 서유럽,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5,000	3,500	2,500
스칸디나비아, 동유럽, 중남미, 기타 CIS지역, 아프리카	5,500	3,850	2,750

○ **항공료 :**

- 지원대상은 초빙과학자 및 배우자이며, 활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배우자 항공료는 지원하지 아니함.
- 항공료는 최단 직항로로 계산한 Economy Class 정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나 초빙과학기술자가 자비로 구입한 항공료는 Economy Class 항공료와 비교하여 적은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함.
- 활용개시 1개월이전 입국시 입국항공료, 활용종료후 1개월 이후 출국시 출국항공료를 지원하지 아니함.
- 초빙계획 변경(초빙기간 연장, 단축, 분리 등)으로 인한 일시귀국 항공료는 지원하지 아니함.
- 초빙과학자가 상해·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초빙이 중단되는 경우 가족 2인 이내(배우자 포함)에서 귀국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음.

- **이사비 :** 초빙과학자의 초빙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초빙지역에 따라 출국시 지원함

《이사비 지원기준》

(단위 : 원)

지 역	지 원 액
유럽 및 동구지역	900,000
북 미 · 호주지역	800,000
일 본 · 중국지역	400,000

- **상해·질병보험료 :** 초빙과학자 본인에 한하여 지원

- 주관연구기관이 보험회사 상품 활용
- 주관연구기관이 초빙과학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11 초빙기간중 해외출장 및 휴가

- 선정된 과제 추진과 관련한 공무수행을 위한 해외출국만 해외출장으로 인정하며, 해외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공무로 인정받아야 함.
- ※ 해외출장보고 : 주관연구기관은 해외과학자 초빙기간중 초빙과학자가 해외출장을 하고자 다녀온 경우 재입국후 7일 이내에 온라인 보고하여야 함.(자세한 일정별 활동내용을 포함하고 여권 사본(입·출국 확인도장 날인면 포함)을 첨부하여야 함)
- ※ 휴가사용보고 : 주관연구기관은 개인적인 사유로 국내·국외에서 휴가 사용시 과총에 반드시 e-mail(brain@kofst.or.kr)로 보고하여야 함.
-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 일시귀국한 경우에도 사후에 보고하여야 함
- 공무출장 관련 여부는 분야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 초빙과학자 유급휴가 허용일수 》

활용기간	휴가일	활용기간	휴가일
3개월 까지	5일	8개월 까지	14일
4개월 까지	7일	9개월 까지	16일
5개월 까지	9일	10개월 까지	18일
6개월 까지	10일	11개월 까지	19일
7개월 까지	12일	12개월 까지	20일
사용지침	1. 유급휴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며,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간연장으로 지원기간이 2년인 경우 1차년도 20일, 2차년도 20일을 통합 또는 연속하여 사용불가 2. 유급휴가는 활용 시작과 종료 시점에 사용할 수 없음 - 휴가사용으로 활용기간을 단축해서 조기 귀국 불가 3. 허용된 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받은 연구지원비를 기준으로 계산, 초과일수 만큼 환수 - 30일 이내 : 일할계산 - 30일 초과 : 30일 단위로 월할계산하고 잔여일수 일할계산 4. 지원기관의 휴무일, 주휴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입출국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		

12 사업비(연구지원비 및 유치경비)의 정산

- 지급받은 유치경비는 항공료, 이사비, 상해·질병보험료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초빙과학자 활용 종료후 정산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초빙과학자 초빙기간중 유급휴가는 “초빙과학자의 유급휴가 허용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구지원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해야 함. 단, 유급휴가가 휴무일을 포함하여 30일이 넘을 경우 월할계산함.
- 초빙과학자가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없이 해외 출입국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일수에서 차감함
- 초빙 중단시 유급휴가 일수는 최종 초빙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함
- 휴가일수 산정시 입·출국일(2일)을 각0.5일로 계산하며 휴일 및 주관연구기관의 휴무일수는 제외함.
- 사업비 초과집행(유급휴가 허용일수 초과분 포함)분에 대해 초빙과학자로부터 미환수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책임을 묻게 되므로 사업비 집행관련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사업비(연구지원비·유치경비) 반납 계좌번호 :
한국씨티은행 186-01286-240-0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3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제협력팀 》

135-71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담당자 : 김민주 선임연구원 ☎ 02-3420-1252
이영옥 연구원 ☎ 02-3420-1255
E-mail: brain@kofst.or.kr

14 | 지원 중단 및 자금 회수

-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초빙과학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함.
 -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단, 형사상 소추에 의함)
 - 초빙과학자가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거나 목적 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신청서 및 각종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평가결과 '부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 과제가 중단된 경우
 - 기타 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초빙과학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초빙과학자가 취업한 경우
 - 사망 또는 심신 장애로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이 곤란한 경우
- 전호의 사유로 인해 운영위원회가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경우 지급된 사업비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회수함

15 | 주관연구기관의 준수 사항

- 본 사업에 의하여 해외과학자를 초빙 활용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산학협력단장)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
 - 초빙과학자에게 숙소 제공
 - 초빙과학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상해·질병보험에 가입

16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 발표물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과제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은 소속기관(산학협력단)의 내규에 따라 처리함
- 연구결과 발표물에는 아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영문표기 : This paper was studied with the support of the MEST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II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	주요내용	추진기관
계획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교과부 과총
과제공모	- 과제신청 및 해외과학자 초빙안내 공고	과총
지원신청	- 과제 및 초빙과학자 지원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요건심사, 전문가 심사, 종합평가)	- 활용과제 / 초빙자 (개인·동시) 심사 선정	
선정결과 통보	- 신청 기관에 선정결과 통보	
결과협의	- 초빙과학자와 초빙요건 협의 - 협의결과 과총에 회신	주관연구 기관
입국보고	- 초빙과학자 입국후 입국 보고서 (초빙계약서, 협약서 등 포함) 제출 -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수행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초빙과학자 입국후 입국보고서 접수하여 협약체결 - 사업비(연구지원비·유치경비) 지급	과총
평가	-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또는 지원금 환수	